

파트너십 협약서

강북구보건소(이하 “강북구” 라 칭함) 및 필립스코리아 Personal Health사업부(이하 “필립스” 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강북구와 필립스간의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상호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업무와 권리, 의무 및 그 범위 등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1. ‘필립스’는 ‘강북구’에게 PHILIPS Oral healthcare관련 물품 군을 공급하고, 연중 시행되는 구강관리교육에 대한 프로세스를 일임하며, 이와 관련된 물품 공급 계약은 별첨의 “물품 공급 상세 내역”의 내용을 따른다.
2. ‘강북구’는 ‘필립스’의 제품을 구강보건교육 콘텐츠로 활용하여 양치를 기피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아동과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음과칫솔의 유효성이 전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① ‘강북구’는 ‘필립스’가 제공한 제품과 교육자료를 구강보건교육에 활용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강북구’는 시행한 구강보건교육의 결과가 가정으로 안내 될 수 있도록 구강검진 결과 안내문을 배포할 의무를 가진다. 이때의 안내문 기본 양식은 ‘강북구’가 제공하되, 해당 안내문 내에 음과칫솔 교육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도록 안내문을 리뉴얼한다.

이를 위한 디자인 제작은 '필립스' 에서 진행한다.

③ '필립스' 는 본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안내문 인쇄, 실습 교구, 으뜸치아어린이선발대회 시상품 지급)을 '강북구' 에 지원하며, '강북구' 는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 구강보건교육 및 으뜸치아어린이선발대회 운영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201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단, '강북구' , '필립스' 중 어느 한 쪽이 협약된 이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보건소와 필립스코리아는 위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협약서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서명하고 양측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 월 2 일

강북구 보건소

필립스코리아 Personal Health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272

897(번동)

강북구 보건소장 이인영 (인)

부사장 서홍표 (인)